

2020.11.1.SUN

법원행정처

# 목 차

# contents

내규	상임전문심리위원 선발위원회 내규 폐지내규	1833
	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 등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 내규	1834
예규	성과상여금 지급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	1842
신법령목록		1844

# 내규

### ● 상임전문심리위원 선발위원회 내규 폐지내규

(법원행정처 내규 제102호 2020. 10. 23. 결재)

상임전문심리위원 선발위원회 내규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내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●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 등에 관한 내규 일부개정내규

(대법원내규 제522호 2020. 10. 26. 결재)

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 등에 관한 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"해외연수, 국제회의 참가, 직무상 해외출장, 국제화연수"를 "해외연수, 국제회의 참가, 직무상 해외출장, 국제화연수, 연임법관연수"로 한다.

제15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국비 해외연수자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연수결과보고서 또는 제10조에 의하여 부과 받은 과제에 대한 연구결과보고서 제출기한 연장을 희망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의 서식에 의한 사유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.
- ④ 국비 해외연수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연수에 소요된 경비를 반납하여야 한다.
- 1.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
- 2.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연장된 제출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
- ⑤ 제4항에 따른 연수경비 반납의무자는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.

제15조의2제4항 중 "제15조제1항"을 "제15조"로 한다.

제7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# 제7장 연임법관연수

- 제40조(연임법관연수) ① 법원행정처장은 연임한 법관에게 연수(이하 '연임법관연수'라 한다)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.
  - ② 법원행정처장은 예산, 해외연수 기회 부여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연임법관연수 대상자 중 국비 해외 연임법관연수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.

- ③ 연임법관연수를 실시한 연수자(자비로 연임법관연수를 실시한 자를 포함한다)는 연수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에게 연수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연수자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서 정한 연수결과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을 희망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사유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30일의 범위에서 연수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- ⑤ 연수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운임, 숙박비, 식비, 일비 등 연임법관연수에 소요된 경비(보수는 제외한다)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.
- 1.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
- 2.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
- ⑥ 제5항에 따른 반납의무자는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다

별표 2 "경비 환수액 산정 기준표"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### 경비 환수액 산정 기준표

구분 기준	환 급 액	
1. 제14조제3항제1·2호 해당자	소요경비 전액	
2. 제14조제3항제3호 해당자	의무복무월수-복무월수 소요경비 × 의무복무월수,,,,	
3. 제15조제4항제1호 해당자	지급된 월 체재비의 1배 환수	
4. 제15조제4항제2호 해당자	지급된 소요경비(학자금과 체재비 등)의 20%	
	환수	

<sup>\*</sup> 의무복무월수 및 복무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5일 미만은 버리고,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한다.

- \* 해외연수를 위하여 지급받은 외화표시 소요경비는 제14조제3항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의 현찰매도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.
- \*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시 제4호에 해당된 경우 그 추가반납액은 지급된 소요 경비(학자금과 체재비 등)의 20%에 해당하는 금원으로 한다.

별표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# **소요경비 반납액의 산정기준**(제40조 관련)

기준 결과보고서 제출시기	반 납 액
1. 제40조제5항제1호 해당자	소요경비 × 20%
2. 제40조제5항제2호 해당자	소요경비 × 40%

비고

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시 제2호에 해당된 경우 그 추가반납액은 소요경비의 40%에 해당하는 금원으로 한다.

별지 제8호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내규는 즉시 시행한다. 다만,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①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 내규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연임법관연수부터 적용한다.

②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내규 시행 후 최초로 출국하는 국비 해외연수자부터 적용한다.

[별지 제8호]

## 사 유 서

성	명	한글(한자)	(	)
\(\frac{1}{2}\)	영 문			
	소	속		
	직	위		
Ç	연수학	교(연수국가)		
	연	수 과 정		
	연	수종료일		
결.	과보고	1서 제출 기한		
	사	Ŷ.		
	비	ন		

위와 같이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합니다.

20 . . .

신청인

(인) 또는 서명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#### 현 행

#### 제2조(적용범위)

① 이 내규는 재원의 여하를 불문하고 해외 ② -----연수, 국제회의 참가, 직무상 해외출장, 국 연수, 국제회의 참가, 직무상 해외출장, 국 제화연수에 관하여 적용한다. 다만 대법관 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.

② (생 략)

#### 제15조 (연수종료보고 등)

① ~ ② (생 략)

〈신 설〉

제15조의2(연구법관의 해외연구)

#### 개 정 안

#### 제2조(적용범위)

제화연수, 연임법관연수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#### 제15조 (연수종료보고 등)

- ① ~ ② (현행과 같음)
- ③ 국비 해외연수자가 질병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연수결과보고서 또는 제10조 에 의하여 부과받은 과제에 대한 연구결 과보고서 제출기한 연장을 희망하는 때 에는 별지 제8호의 서식에 의한 사유서 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30일 이내의 범 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.
- ④ 국비 해외연수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연수에 소요된 경비를 반납하여야 한다.
- 1.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결과보고서 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
- 2.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연장된 제 출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결과보고서 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
- ⑤ 제4항에 따른 연수경비 반납의무자는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.

제15조의2(연구법관의 해외연구)

#### 현 행

- ① ~ ③ (생 략)
- ④ 해외연구를 위하여 출국하는 연구법 관에 대하여는 제11조. 14조의2 및 제15 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- ⑤ (생 략)
- 〈신 설〉

#### 개 정 안

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------레15 조의 -----.

⑤ (현행과 같음)

법원공보

#### 제7장 연임법관연수

#### 제40조(연임법관연수)

- ① 법원행정처장은 연임한 법관에게 연수 (이하 '연임법관연수'라 한다)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.
- ② 법원행정처장은 예산, 해외연수 기회 부여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연임법관 연수 대상자 중 국비 해외 연임법관연수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.
- ③ 연임법관연수를 실시한 연수자(자비로 연임법관연수를 실시한 자를 포함한다)는 연수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법원행정처장 에게 연수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.
- ④ 연수자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서 정한 연수결과보고서 제출 기 한 연장을 희망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사유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 은 30일의 범위에서 연수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- ⑤ 연수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운임, 숙 박비, 식비, 일비 등 연임법관연수에 소 요된 경비(보수는 제외한다)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여야 한다.
- 1.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결과보고서

#### 현 행

제1603호

#### [별표 2]

#### 경비 환수액 산정 기준표

구분 기준	환 급 액
1. 제14조 제3항 제1·2호 해당자	소요경비 전액
2. 제14조 제3항 제3호 해당자	의무복무월수-복무월수 소요경비 ×의무복무월수 의무복무월수

- \* 의무복무월수 및 복무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5 일 미만은 버리고,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한다.
- \* 해외연수를 위하여 지급받은 외화표시 소요경비는 제14조제3항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의 현찰매도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.

#### 〈신 설〉

#### 개 정 안

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

2.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결과보고서
제출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결과보고
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

⑥ 제5항에 따른 반납의무자는 반납고지
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

[별표 2]

납부하여야 한다.

#### 경비 환수액 산정 기준표

구분 기준	환 급 액
1. 제14조제3항 제1·2호 해당자	소요경비 전액
2. 제14조제3항 제3호 해당자	의무복무월수-복무월수 소요경비 × 의무복무월수 의무복무월수
3. 제15조제4항 제1호 해당자	지급된 월 체재비의 1배 환수
4. 제15조제4항 제2호 해당자	<u>지급된 소요경비(학자금과 체재비</u> <u>등)의 20% 환수</u>

- \* 의무복무월수 및 복무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15일 미만은 버리고,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한다.
- \* 해외연수를 위하여 지급받은 외화표시 소요경비는 제14조제3항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의 현찰매도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.
- \*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시 제4호에 해당된 경우 그 추가반납액은 지급된 소요경비(화자금 과 체재비 등)의 20%에 해당하는 금원으로 한다.

#### [별표 3]

#### 소요경비 반납액의 산정기준(제40조 관련)

기준	
결과보고서	반납액
제출시기	
1. 제40조제5항제1호 해당자	소요경비 × 20%
2. 제40조제5항제2호 해당자	소요경비 × 40%

현 행	개 정 안
	비고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시 제2호에 해당된 경 우 그 추가반납액은 소요경비의 40%에 해당하는 금원으로 한다.
<u>〈신 설〉</u>	[별지 제8호] <u>사유서</u>
	성 명 한글(한자) ( )
	영 문
	소 속
	직 위
	연수학교(연수국가)
	연 수 과 정
	연수종료일
	결과보고서 제출 기한
	사 유
	비고
	위와 같이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합니다.
	20
	신청인 (인) 또는 서명

# 예규

### ● 성과상여금 지급업무 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

(대법원행정예규 제1232호 2020. 10. 14. 결재)

성과상여금 지급업무 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Ⅳ. 3. 가. 중 "7인"을 "12인"으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예규는 2020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#### 현 행

- Ⅳ. 성과급심사위원회
- 1. ~ 2. (생 략)
- 3. 위원회의 구성

가. 위원회는 「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 규칙」제12조제5항에 따라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의 상급공무원 중에서 소속기 관장이 지정하는 <u>7인</u>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.

4. (생략)

#### 개 정 안

- IV. 성과급심사위원회
- 1. ~ 2. (현행과 같음)
- 3. 위원회의 구성

가		
	- <u>12인</u>	

4. (현행과 같음)

14

# 신법령 목록

 $(2020. 10. 1. \sim 10. 15.)$ 

조 약				
조약제2460호	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 개정의정서	19848	2020. 10. 5.	5
	대통령령			
대통령령제31082호	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	19848	2020. 10. 5.	8
대통령령제31083호	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	19850	2020. 10. 7.	7
대통령령제31084호	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	"	"	12
대통령령제31085호	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	"	"	14
대통령령제31086호	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	"	"	17
대통령령제31087호	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	"	"	19
대통령령제31088호	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	"	"	20
대통령령제31089호	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	"	n	25
대통령령제31090호	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	"	"	46
대통령령제31091호	법률 제16908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 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	n	n,	51
대통령령제31092호	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	"	"	51
대통령령제31093호	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	"	"	52
대통령령제31094호	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 정령	"	n	53
대통령령제31095호	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 정령	"	n	54

15

84

91

105

보건복지부령제756호

국토교통부령제765호

국토교통부령제767호

대통령령제31096호	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	19850	2020. 10. 7.	55
대통령령제31097호	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	"	n	56
대통령령제31111호	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	19853	2020. 10. 13.	4
대통령령제31112호	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일부개정령	"	n	22
대통령령제31113호	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일부개정령	"	n	30
	····· 총리령 ·····	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*		
총리령제1649호	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 부개정령	19851	2020. 10. 8.	4
총리령제1650호	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	19854	2020. 10. 14.	4
	 부 령 >			
기획재정부령제806호	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19848	2020. 10. 5.	9
기획재정부령제808호	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 정령	"	n	16
행정안전부령제204호	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"	"	38
기획재정부령제809호	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19850	2020. 10. 7.	57
법무부령제985호	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 부개정령	"	n	66
행정안전부령제205호	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"	"	68
농림축산식품부령제449호	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 칙 일부개정령	"	n	75
농림축산식품부령제450호	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"	"	79
보건복지부령제754호	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	"	"	83

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

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
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
행규칙 일부개정령

개정령

제1603호

법무부령제981호	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정정	19850	2020. 10. 7.	118
보건복지부령제753호	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19851	2020. 10. 8.	8
보건복지부령제755호	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	"	n	9
보건복지부령제757호	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"	"	12
국토교통부령제762호	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	"	n	19
국토교통부령제763호	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	"	n	20
국토교통부령제764호	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 정령	"	n	22
국토교통부령제766호	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n	"	23
해양수산부령제440호	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 칙 일부개정령	"	"	23
중소벤처기업부령제38호	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"	n	27
행정안전부령제206호	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19852	2020. 10. 12.	5
해양수산부령제441호	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 한 규칙 일부개정령	"	n	14
환경부령제857호	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정정	"	n	17
교육부령제220호	학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	19853	2020. 10. 13.	31
법무부령제986호	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	"	n	32
산업통상자원부령제396호	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 규칙 일부개정령	19854	2020, 10, 14,	7
국토교통부령제768호	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 부개정령	19855	2020, 10, 15,	4
대통령령제31086호	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정정	"	"	8